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20 년 월 일

본 인 : (인)

주 소 :

본인은 [귀 행]과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을 함에 있어서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전자채권의 보관 등)

은행은 전자채권 발행대행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합니다)의 발행등록 의뢰에 의하여 전자채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받아 본인에게 전자적으로 전자채권의 보관, 결제대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2조 (전자채권의 보관통지)

은행은 보관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본인에게 별도로 보관통지 하지 않으며,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입금계좌 지정)

① 본인은 전자채권의 보관 및 결제대금의 수령과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전자채권 결제대금수령 및 수수료 결제 통장으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② 전항의 입금계좌는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에 한하여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5조 (수수료 등)

①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수수료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예금청구서 등을 받음이 없이 제4조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대상, 시기,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제6조 (전자채권의 발행취소 및 변경)

①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는 원칙적으로 구매기업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발행은행의 시스템장애 등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발행은행의 취소요청만으로 취소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발행된 전자채권은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과 협의하여 발행된 전자채권을 취소한 이후에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전자채권의 만기결제)

보관중인 전자채권의 만기도래시 만기일 전영업일에 발행은행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며, 만기일에 발행은행으로부터 입금내역이 통보되는 경우에 제4조에서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5-06-0258(3-1) (2018.07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054호

KEB 하나은행

제8조 (전자채권의 미결제)
발행은행으로부터 미결제내역이 통보되거나 입금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전자채권은 미결제처리됩니다.

제9조 (약정의 해지 등)
본 약정은 은행 또는 본인이 서면으로 해지통보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근 1년이상 전자채권 보관 등 이용실적이 없어 은행이 임의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동의)
전자채권 결제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를 금융결제원, 발행은행 및 전자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참가은행, 구매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다음 각 호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제8조에 의해 미결제내역을 통지하였으나 본인의 확인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2. 제4조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의 거래정지,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입금불능이나 입금지연됨 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2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약관 및 약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관할법원의 합의)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본인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본 약정을 체결함.	본 인	(인)

5-06-0258(3-2) (2018.07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054호

KEB 하나은행

전자채권 결제제도 판매기업 이용 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 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1. 판매기업 정보

법인명 (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업 태		종 목	
주요취급품목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공공 및 기타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 에 "✓" 표시 합니다.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		담당자이메일	
SMS수신여부	☐ 동의 ☐ 거절	이메일수신여부	☐ 동의 ☐ 거절

3. 첨부서류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3)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

① 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② 개인사업자 :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4) 공동대표인 경우

①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5)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전자채권 결제제도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판매기업) : _____ (인)

5-06-0258(3-3) (2018.07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054호

KEB 하나은행